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설치 및 기능)”을“(설치 및 존속기한)”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청계천복원공사의 준공일까지 존속한다.

제6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역사문화분과위원회 : 문화국장
2. 자연환경분과위원회 : 환경국장
3. 건설안전분과위원회 : 건설기획국장
4. 교통분과위원회 : 교통국장
5. 도시계획분과위원회 : 도시계획국장
6. 시민의견분과위원회 : 대변인

제7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 당시의 위원임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45
------	-----

2004년 9.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04. 8. 19
- 위원회 회부일자 : 2004. 8. 23
-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04. 9. 9)상정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도시계획국장 이종상)

가. 제안이유

- 서울시 균형발전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뉴타운사업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120퍼센트 이하에서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안 제55조제1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재대)

가. 개정내용

- 서울시 균형발전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뉴타운사업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120퍼센트 이하에서 150퍼센트 이